

(3) 인하된 종합소득세율을 반영한 근로소득자의 월별 원천징수세액을 명확히 함으로써 월별 원천징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법인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무현 인

2005년 2월 19일

국무총리 이 해 찬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이 헌 재
장 관

●대통령령 제18706호

법인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법인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법인세법시행령”을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동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가 행하는 혈액사업 제19조제17호를 제18호로 하고, 동조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

며, 동조제18호(종전의 제17호)중 “제1호 내지 제16호”를 “제1호 내지 제17호”로 한다.

17.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을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백만원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36조제2항중 “비영리내국법인”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법인의”를 “단체의”로 한다.

제38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76조”를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로 하고, 동항제1호중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정치자금기부금”이라 한다)”을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문화예술진흥기부금”이라 한다)”으로 하며, 동항제2호 산식외의 부분중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기부금”을 “기부금(문화예술진흥기부금을 제외한다)”으로 하고, 동호 산식중 “정치자금기부금”을 “문화예술진흥기부금”으로 하며, 동항제3호 산식중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조세특례제한법”을 “법정기부금 -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중 “법 제25조제1항제1호 및 법 제28조제2항제1호 단서”를

“법 제25조제1항제1호”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49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제54조를 삭제한다.

제55조 각호외의 부분중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하고, 동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58조제1항중 “손금산입기준에 따라 승인”을 “손금산입기준에 따라 적립”으로, “농업협동조합법”을 “「농업협동조합법」”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을 “「수산업협동조합법」”으로 한다.

제61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제28호, 제35호 및 제36호”를 “제28호 및 제35호 내지 제37호”로,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제37호의 경우에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를 말한다)”로 하고, 동항제16호중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으로 하며, 동항에 제3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7. 제32호에 의한 법인중 신용불량자에 대한 대부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

제6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 및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제64조제6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한국철도공사법」

제89조제2항제1호 본문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그 가액”을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2호중 “금융지주회사법”을 “「금융지주회사법」”으로, “자회사”를 “자회사(손자회사를 포함한다)”로 하며, 동조제6항 전단중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제39조의2, 동법시행령 제28조제3항 내지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제3항”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제39조의2, 동법 시행령 제28조제3항 내지 제6항·제29조제3항 및 제29조의2제2항”으로 하고, 동항 후단중 “대주주”·“지배주주등”을 “대주주”로, “1억원(동시행령 제28조제3항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3억원)”을 “3억원”으로 한다.

제99조의2제1항중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제4호(주식등에 한한다) 및 제5호”를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나목(주식등에 한한다) 및 동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제5호”로 한다.

제106조제1항제3호마목중 “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동조제2항과 조세특례제한법”을 “법 제28조제1항제4호와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1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경우에는 채권등의 이자로서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한한다.”를 “수입금액을 제외한다.”로 하고, 동항제7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7.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9.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제112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투자회사”라 한다)”를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로,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분배금 및 투자회사의 배당 또는 분배금”을 “분배금”으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2호중 “신탁재산등이 소득세법시행령”을 “신탁재산이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신탁재산등”을 “신탁재산”으로 한다.

1. 제2항의 법인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한 세액

제113조의 제목 “(의제원천징수세액공제액 등)”을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대상금액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권등의 이자등(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기 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채권등을 매도하는 경우의 이자등을 말한다)에 대한 원천징수대상소득은 내국법인이 채권등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소득으로 한다.

제113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 및 제9항을 각각 삭제하며, 동조제6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으로 하고, 동조제10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12항 및 제1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권등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소득은 채권등의 액면가액 등에 제1호 각목의 기간과 제2호

각목의 이자율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 및 제114조의 2에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⑩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당해 신탁재산에 귀속 되는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그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법인은 동 확인서의 사본을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 운용회사에 교부하여야 한다.

- 1.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을 경영하는 금융기관
- 2.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수탁회사

⑫법 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법인(이하 이 항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을 제외한 법인이 채권등을 금융기관에 게 매도하는 경우 제2항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약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자의 행위로 본다.

- 1. 제61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법인
- 2.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⑬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등의 매도로 보는 경우 관리하는 재

산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에 관하여는 당해 재산을 관리하는 법인이 채권등을 매도하는 것으로 본다.

제114조를 삭제한다.

제1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4조의2(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의 원천징수 및 환급 등) ①법 제73조제8항에서 “환매조건부채권매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로서 동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증권거래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예탁결제원의 계좌를 통하여 확인되거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 1. 금융기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및 제111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이 일정기간 후에 일정가격으로 환매수 또는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권등을 매도 또는 매입하는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 2. 제1호와 유사한 거래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의 경우 채권등을 매도한 날부터 환매수한 날까지의 기간동안 동 채권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상당하는 금액은 매도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법 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를 통하여 매수자(이하 이 조에서 “환매조건부채권의 매수자”라 한다)가 매입한 채권등이 제3자에게 매도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등을 매도하는 자(환매조건부채권의 매수자를 포함하되, 제111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에게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환매조건부채권의 매수자는 원천징수당한 세액을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을 환급받고자 하는 환매조건부채권의 매수자는 제3자에게 매도한 채권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를 통하여 매입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의 납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환매조건부채권의 매수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환급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거래사실 및 환급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제119조제1항중 “법 제76조제1항제3호”를 “법 제76조제1항제3호 및 법 제76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3장제1절에 제1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0조의2(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법 제78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변호사법」에 의하여 법무법인이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32조에 제1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⑭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과 유가증권(채권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대차거래를 하여 유가증권 차입자로부터 지급받는 배당 등의 보상금상당액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3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에서 “자본금상당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하며, 미지급 법인세를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제136조의2를 삭제한다.

제138조의3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지급하는 자”를 “지급하는 자 또는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기 전에 외국법인으로부터 채권등을 매수하는 자”로,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7항을 삭제한다.

제158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4. 제164조제7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제15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를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법인”을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법인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법인”으로 한다.

제16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1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조제1호 내지 제11호의 법인(그 중앙회 및 연합회를 제외한다)
2.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 및 투자전문회사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등 간접투자를 행하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4. 한국자산관리공사등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 투자자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정부투자기관 주주등”이라 한다)인 법인중 정부투자기관 주주등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인 법인
5.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

제161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제2항제3호에서 “소액출자자”라 함은 출자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출자자를 말한다.”를 “제2항제3호에서 “소액주주”라 함은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주주를 말하고, 제2항제3호에서 “소액출자자”라 함은 출자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출자자를 말한다.”로 하며, 동조제5항제4호를 삭제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중 소액주주의 주식 또는 소액출자자의 출자지분

제164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항만공사법」에 의한 항만공사가 공급하는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화물료 징수용역
2. 그 밖에 거래금액 및 거래건수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제1조 각호외의 부분중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농업협동조합법”을 “「농업협동조합법」”으로 하며, 동조제3

호중 “수산업협동조합법”을 “「수산업협동조합법」”으로 하고, 동조제4호중 “산림조합법”을 “「산림조합법」”으로 하며, 동조제5호중 “업연초생산협동조합법”을 “「업연초생산협동조합법」”으로 하고, 동조제8호중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으로 하며, 동조제9호중 “신용협동조합법”을 “「신용협동조합법」”으로 하고, 동조제10호중 “새마을금고법”을 “「새마을금고법」”으로 하며, 동조제11호중 “염업조합법”을 “「염업조합법」”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을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으로, “평생교육법”을 “「평생교육법」”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사회복지사업법”을 “「사회복지사업법」”으로 하고, 동항제5호가목중 “국민연금법”을 “「국민연금법」”으로 하며, 동항제6호중 “국민건강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하고, 동항제7호중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으로 하며, 동항제8호가목중 “예금자보호법”을 “「예금자보호법」”으로 하고, 동호나목중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을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으로 하며, 동호다목중 “새마을금고법”을 “「새마을금고법」”으로 하고, 동호라목중 “금융기관부실자

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을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호마목중 “신용협동조합법”을 “「신용협동조합법」”으로 하고, 동호바목중 “산림조합법”을 “「산림조합법」”으로 하며, 동조제3항 본문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라목중 “국세기본법”을 “「국세기본법」”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 및 동조제3항중 “상법”을 각각 “「상법」”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자산재평가법”을 “「자산재평가법」”으로 한다.

제13조제1호중 “상법”을 “「상법」”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각각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으로 하고, 동호나목중 “상법”을 “「상법」”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전단중 “상법”을 “「상법」”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한다.

제17조의2제1항 전단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독점규

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하며, 동항제2호가목 및 나목중 “금융지주회사법”을 각각 “「금융지주회사법」”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2호가목중 “회사정리법”을 “「회사정리법」”으로 하고, 동호나목중 “화의법”을 “「화의법」”으로 하며, 동호다목중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으로 한다.

제19조제8호중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으로 하고, 동조제15호중 “초·중등교육법”을 “「초·중등교육법」”으로 하며, 동조제16호중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자복지기본법」”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전단 및 후단중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상법”을 각각 “「상법」”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부가가치세법”을 각각 “「부가가치세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2호나목중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을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으로 하고, 동호바목중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을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으로 하며, 동호사목중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하고, 동호아목중 “전파법”을 “「전파법」”으로, “항공법”을 “「항공법」”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각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을 각각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6항 각호외의 부분중 “자산유동화에 관한법률”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6조제1항제3호중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을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으로 하고, 동항제8호중 “전파법”을 “「전파법」”으로, “항공법” “「항공법」”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3호중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하고, 동조제6항 후단중 “대한광업진흥공사법”을 “「대한광업진흥공사법」”으로 한다.

제29조의2제1항 전단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중 “사회복지사업법”을 “「사회복지사업법」”으로 하고, 동호나목 및 동항제2호가목중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을 각각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으로, “기능대학법”을 각각 “「기능대학법」”으로, “평생교육법”을 각각 “「평생교육법」”으로 하며, 동항제1호라목중 “문화예술진흥법”을 “「문화예술진흥법」”으로 하고, 동호바목중 “의료법”을 “「의료법」”으로 하며, 동

항제2호나목중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중 “한국은행법”을 “「한국은행법」”으로,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을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2항중 “향토예비군설치법”을 “「향토예비군설치법」”으로 하며, 동조제3항 및 제5항중 “조세특례제한법”을 각각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1호중 “증권거래법”을 각각 “「증권거래법」”으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각각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한국수출입은행법”을 “「한국수출입은행법」”으로 한다.

제41조제2항중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제44조제2항제3호중 “근로기준법”을 “「근로기준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2호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제5호중 “국민건강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하고, 동항제6호중 “영유아보육법”을 “「영유아보육법」”으로 하며, 동항

제7호중 “고용보험법”을 “「고용보험법」”으로 한다.

제47조제1항중 “보험업법”을 “「보험업법」”으로, “농업협동조합법”을 “「농업협동조합법」”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을 “「수산업협동조합법」”으로 한다.

제49조제1항제1호 단서중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0조제1호 단서중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을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2호중 “국세기본법시행령”을 “「국세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52조제6항제2호중 “소득세법시행령”을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53조제4항제1호가목중 “재정융자특별회계법”을 “「재정융자 특별회계법」”으로, “한국은행법”을 “「한국은행법」”으로 하고, 동호라목중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외국환거래법”을 “「외국환거래법」”으로 한다.

제55조제5호중 “조세특례제한법”을 각각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제56조제6항제2호중 “국세기본법”을 “「국세기본법」”으로 하고, 동항

제4호중 “농업협동조합법”을 “「농업협동조합법」”으로 하며, 동항제5호중 “농업협동조합법”을 “「농업협동조합법」”으로,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6호중 “수산업협동조합법”을 “「수산업협동조합법」”으로,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항제7호중 “신용협동조합법”을 “「신용협동조합법」”으로 하고, 동항제8호중 “새마을금고법”을 “「새마을금고법」”으로 하며, 동항제9호중 “산림조합법”을 “「산림조합법」”으로 한다.

제57조제1항제1호중 “농업협동조합법”을 “「농업협동조합법」”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을 “「수산업협동조합법」”으로, “수출보험법”을 “「수출보험법」”으로 한다.

제60조제3항중 “국민연금법”을 “「국민연금법」”으로 한다.

제61조제2항제1호중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한국산업은행법”을 “「한국산업은행법」”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중소기업은행법”을 “「중소기업은행법」”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한국수출입은행법”을 “「한국수출입은행법」”으로 하며, 동항제5호중 “장기신용은행법”을 “「장기신용은행법」”으로 하고, 동항제6호중 “농업협동조합법”을 “「농업협동조합법」”으로 하며, 동항제7호중 “수산업

협동조합법”을 “「수산업협동조합법」”으로 하고, 동항제8호중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하며, 동항제9호중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을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10호중 “상호저축은행법”을 “「상호저축은행법」”으로 하며, 동항제11호중 “보험업법”을 “「보험업법」”으로 하고, 동항제12호중 “신탁업법”을 “「신탁업법」”으로 하며, 동항제13호중 “신용보증기금법”을 “「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하고, 동항제14호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하며, 동항제15호중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으로 하고, 동항제17호중 “수출보험법”을 “「수출보험법」”으로 하며, 동항제18호중 “예금자보호법”을 “「예금자보호법」”으로 하고, 동항제19호중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기관부실 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항제20호중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하고, 동항제21호중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하며, 동항제22호중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23호중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을 “「종합금융 회사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항제24호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으로 하고, 동항제25호중 “선물거래법”을

“「선물거래법」”으로 하며, 동항제26호중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으로 하고, 동항제27호중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을 “「지역신용보증재단법」”으로 하며, 동항제28호중 “산림조합법”을 “「산림조합법」”으로 하고, 동항제30호중 “산업재해보상법”을 “「산업재해보상법」”으로 하며, 동항제31호중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을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32호중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을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항제33호중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하고, 동항제34호중 “새마을금고법”을 “「새마을금고법」”으로 하며, 동항제35호중 “금융지주회사법”을 “「금융지주회사법」”으로 하고, 동항제36호중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으로 하며, 동조제4항제1호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4호중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을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2조제1항제1호중 “상법”을 “「상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어음법”을 “「어음법」”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수표법”을 “「수표법」”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민법”을 “「민법」”으로 하며, 동항제5호중

“회사정리법”을 “「회사정리법」”으로, “화의법”을 “「화의법」”으로 하고, 동항제6호중 “민사집행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하며, 동항제10호중 “국세징수법”을 “「국세징수법」”으로 한다.

제63조제1항제2호중 “주택법”을 “「주택법」”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하며, 동항제5호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을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으로 하고, 동항제6호중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으로 하며, 동항제7호중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8호중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으로 하며, 동조제3항제2호중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을 “「지역신용보증재단법」”으로 한다.

제64조제2항중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지방재정법”을 “「지방재정법」”으로 하고, 동조제6항제1호중 “농어촌전화촉진법”을 “「농어촌전화촉진법」”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전기사업법”을 “「전기사업법」”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한다.

제65조제1항제1호중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정보화촉진 기본법」”으

로 하고, 동항제2호중 “수도법”을 “「수도법」”으로 한다.

제70조제1항제1호·제2호 및 동조제2항중 “소득세법시행령”을 각각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3항 단서중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으로 한다.

제71조제2항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제73조제2호다목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으로 하고, 동조제3호 단서중 “한국은행법”을 “「한국은행법」”으로 하며, 동조제5호중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7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으로 한다.

제76조제1항중 “외국환거래법”을 “「외국환거래법」”으로 한다.

제78조제2항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한다.

제79조제1호중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3호중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을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으로 한다.

제85조제1항제3호다목 및 동조제2항제3호다목중 “조세특례제한법”을 각각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제86조제1항 및 제2항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86조의2제1항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으로, “상법”을 “「상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3호중 “신탁업법”을 “「신탁업법」”으로 한다.

제87조제1항제1호중 “상법”을 “「상법」”으로 하고, 동항제7호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8조제1항제8호나목중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한다.

제89조제2항제2호중 “상속세및증여세법”을 각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하고, 제3항제1호나목중 “소득세법시행령”을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90조제1항제2호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1조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92조의2제1항제1호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조제2항제1호중 “임대주택법”을 “「임대주택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 전단중 “소득세법시행령”을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조제4항제1호 전단중 “도시개발법”을 “「도시개발법」”으로 하고, 동호 후단중 “소득세법시행령”을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한국토지공사법」”을 “「한국토지공사법」”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임대주택법”을 “「임대주택법」”으로 한다.

제94조제1항 단서중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5조제6항중 “국세징수법”을 “「국세징수법」”으로 한다.

제95조의2중 “지방세법시행령”을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97조제4항 본문중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7항중 “세무사법”을 “「세무사법」”으로 하며, 동조제9항중 “국세기본법”을 “「국세기본법」”으로 한다.

제98조제2항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령」”으로 한다.

제99조의2제4항중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한다.

제101조제1항중 “국세징수법”을 “「국세징수법」”으로 한다.

제102조제1항중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2항중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한다.

제103조의2제1호 내지 제3호중 “증권거래법”을 각각 “「증권거래법」”으로 하고, 동조제4호 내지 제6호중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을 각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4조제2항제1호다목중 “소득세법시행령”을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하고, “소득세법시행령”을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제106조제1항제1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중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하고, 동호다목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하며, 동항제3호다목·바목 및 사목중 “조세특례제한법”을 각각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하고, 동호자목중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한다.

제110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중 “국세기본법”을 각각 “「국세기본법」”으로 한다.

제111조제1항제2호 본문중 “신탁업법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신탁업법」 및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으로 하고, 동호 단서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하며, 동항제5호 각목외의 부분중 “국채법 또는 공사채등록법”을 “「국채법」 또는 「공사채등록법」”으로 하고, 동호나목중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을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으로 하며, 동항제7호중 “대한주택공사법”을 “「대한주택공사법」”으로, “주택법”을 “「주택법」”으로, “국민연금법”을 “「국민연금법」”으로,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을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중 “한국은행법”을 “「한국은행법」”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선물거래법”을 “「선물거래법」”으로 하며, 동항제5호중 “농업협동조합법”을 “「농업협동조합법」”으로 하고, 동항제6호중 “수산업협동조합법”을 “「수산업협동조합법」”으로 하며, 동항제8호중 “신용협동조합법”을 “「신용협동조합법」”으로 하고, 동항제11호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으로 하며, 동항제12호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기금관리기본법」”으로, “국세기본법”을 “「국세기본법」”으로 하고, 동조제5항 본문중 “소득세법시행령”을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12조제2항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으로 한다.

제113조제5항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각각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으로, “소득세법시행령”을 각각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8항 본문중 “소득세법시행령”을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15조제1항중 “국세징수법”을 “「국세징수법」”으로 한다.

제117조제1항중 “소득세법시행령”을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18조제4항제3호 본문 및 동항제4호 본문중 “조세특례제한법”을 각각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하고, 동항제3호의2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20조제9항 본문중 “소득세법시행령”을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22조제1항제3호나목중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한다.

제123조제1항제3호나목중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한다.

제129조의2제2항중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

로 하고, 동조제4항 및 제5항중 “소득세법시행령”을 각각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31조제1항 및 제2항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각각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3항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한다.

제131조의2 각호외의 부분중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한다.

제132조제2항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하고, 동조제7항제2호 단서중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하며, 동조제8항중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선물거래법”을 “「선물거래법」”으로 하고, 동조제10항제1호중 “소득세법”을 각각 “「소득세법」”으로 하며, 동항제2호 전단중 “소득세법”을 각각 “「소득세법」”으로, 동법시행령을 동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11항중 “소득세법시행령”을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조제12항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37조제1항 및 제2항중 “소득세법시행령”을 각각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국세기본법”을 “「국세기본법」”으로 한다.

제138의4제3항중 “국세기본법”을 “「국세기본법」”으로 하고, 동조제

제6항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하며, 동조제7항제1호중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제154조제2항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57조제2항 후단중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58조제1항제1호다목중 “소득세법시행령”을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항제2호 본문중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으로 하며, 동호 단서중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하고, 동항제3호 및 동조제2항제3호중 “소득세법”을 각각 “「소득세법」”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하고, 동조제4항제1호중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국세기본법시행령”을 “「국세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60조 각호외의 부분중 “상법”을 “「상법」”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재외국민등록법”을 “「재외국민등록법」”으로 하며, 동조제3호 단서중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으로 하고, 동조제4호 본문중

“출입국관리법”을 “「출입국관리법」”으로 한다.

제161조제2항제2호 단서중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한다.

제162조 본문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동법시행령을 동법시행령으로 한다.

제162조의2제1항제1호중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소득세법시행령”을 “「소득세법시행령」”으로 한다.

제164조제1항·제2항 및 제6항중 “소득세법시행령”을 각각 “「소득세법시행령」”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1조 내지 제114조·제114조의2·제136조의2 및 제13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0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손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6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시가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소득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 내지 제114조, 제136조의2 및 제13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의 원천징수 및 환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 이후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에 의하여 매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미납부가가산세율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이자소득금액 및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유가증권대차거래 보상금상당액에 관한 적용례) 제132조제14항

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지급받는 보상금상당액부터 적용한다.

제12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보관과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8조제2항제4호 및 제164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제출하는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상의 거래기간에 거래된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관련 적용례) 제16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계산서미교부에 대한 가산세의 특례) 법 제76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도매인에 대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각 사업연도별로 계산서를 교부한 금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다음의 비율 이상인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는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보되, 이 경우 시장도매인이 각 사업연도별로 계산서를 교부한 금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다음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별로 총매출액에서 다음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과 계산서를 교부한 금액과의 차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다.

사 업 연 도	비 율
2004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40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80

제15조(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채권등을 취득한 법인(제111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포함한다)에게 2005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당해 채권등에 대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및 동 채권등을 최초로 매도하는 경우의 원천징수대상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제11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채권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이자계산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이자계산기간의 종료일 또는 중도매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자상당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제11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계산방법(제74조제1항제1호가목 내지 다목을 준용하는 방법을 제외한다)을 적용하는 때에는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채권등과 2005년 7월 1일 이후에 취득한 채권등을 구분하여 적용하고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채권등을 먼저 매도한 것으로 본다.

②제111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한 채권등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111조제2항의 개

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중 공제액 등의 계산 및 처리에 대하여는 종전 제1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항에서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중 큰 금액에 당해 내국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납입자본총액에서 국외지배주주가 납입한 자본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의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국내사업장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1.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하며, 미지급법인세를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자본금에 주식발행액 면초과액 및 감자차익을 가산하고 주식할인발행차금 및 감자차손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개정이유

법인세법의 개정(법률 제7317호, 2004. 12. 31. 공포, 2005. 1. 1. 시행)으로 법인의 만기 전 채권매도의 경우 그 보유기간 동안 이자소득에 대한 세액을 매수가격에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만기에 이자를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도록 하던 것을 법인이 매도시에 바로 납부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법인의 조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비과세·면세범위를 확대하고 이중과세의 우려가 있는 제도를 정비하며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공제되는 손금처리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비영리법인의 과세대상 수익사업 범위 조정(영 제2조제1항제9호 신설)
- (1) 국가를 대신하여 대한적십자사가 행하고 있는 혈액사업은 공익적 성격이 강한 업무이므로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비과세할 필요성이 있음.

(2) 「법인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비영리법인의 수익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는 바, 대한적십자가 행하는 혈액사업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혈액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

(3) 혈액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되어 환자에 대한 수혈 및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소액 미술품의 취득가액 손금산입(영 제19조제17호 신설)

(1) 사무실 등의 근무환경을 쾌적하게 하기 위하여 미술품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그 취득가액을 과세대상인 소득금액 계산시 공제되는 손금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음.

(2) 장식·환경미화 등을 위하여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취득가액 1백만원 이하의 소액 미술품에 대하여는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여 그 취득가액을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함.

(3) 미술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문화·예술분야를 지원할 수 있으며, 납세자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의 적용대상 확대(영 제61조제2항 제37호 신설)

(1) 신용불량자에 대한 대부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대부업 법인의 경우에는 업무특성상 대손 발생률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일반법인과는 달리 별도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인정하여 손금처리할 필요성이 있음.

(2)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중 신용불량자에 대한 대부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도록 함.

(3) 신용불량자에 대한 대부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대부업 법인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구상채권상각충당금 대상법인의 범위 확대(영 제63조제1항

제4호 신설)

- (1)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재보증업무가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로 이관되었으므로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에 대하여도 재보증에 의한 구상권행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하여 회계처리하는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 (2)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대상법인의 범위에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를 추가함.
- (3)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가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보증함에 따른 위험을 분산시켜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유통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금융기관의 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영 제111조제2항)

- (1) 채권시장의 활성화 및 금융기관의 업무성격을 감안하여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면제할 필요성이 있음.
- (2) 종전에는 금융기관의 수입원천인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면제하되,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채권 등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도 원천징수를 면제하도록 함.

- (3) 금융기관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고, 채권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받는 법인의 조직변경 범위 조정(영 제120조의2 신설)

- (1) 변호사법의 개정(법률 제7357호, 2005. 1. 27. 공포, 2005. 7. 28. 시행)으로 공동법률사무소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유한)을 설립할 수 있게 하고, 기존의 합명회사인 법무법인을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를 반영할 필요성이 있음.
- (2) 변호사법에 의한 법무법인이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형태만 변경되는 것이므로 청산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 (3) 법률서비스시장의 개방에 대비하여 법무법인의 법무법인

(유한)으로의 조직변경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됨.

사. 유가증권 대차거래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영 제132조제14항
 신설)

(1)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간에 유가증권을 대여하고
 동종·동량의 유가증권을 반환하는 유가증권 대차거래시
 차입자가 대여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상당액에 대한 법인
 세 부과는 당해 유가증권에서 발생하는 배당에 대하여도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과세될 우려가 있으며
 로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2)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따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과 유가증권 대
 차거래를 하여 유가증권 차입자로부터 지급받는 배당 등
 의 보상금상당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인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3) 유가증권 대차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소함
 으로써 유가증권 대차시장의 활성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

대됨.

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제도 개선(영 제161조)

(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이 법인에게 과중한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과세활용의 실익이 적은 경우에는 제출의무
 를 면제하여 줄 필요성이 있음.

(2) 사업연도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은 주식등변
 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앞으로 「간접투자자산 운
 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투자전문회사 및 기업구조조정투
 자회사 등의 경우에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법인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비상장법인의 소액주
 주에 귀속하는 주식등의 변동상황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
 서 제출대상에서 제외함.

(3) 납세협력의무자인 법인에 대한 과중한 부담을 경감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제15924호
 관
 보
 2005. 2.19. (토요일)